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07
----------	-------

발의연월일 : 2025. 7. 29.

발 의 자 : 박상혁 · 정준호 · 서영석
조계원 · 김한규 · 백승아
양문석 · 조승래 · 박수현
임미애 · 이병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문화예술 공연 등의 예매 방식은 현장 판매 등에서 대부분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예매 경쟁 또한 치열해져 일부 공연의 경우 선예매를 통해서만 티켓을 구할 수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공연 관람 등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므로, 이들을 위해 현장 판매나 전화 예매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연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는 공연장 입장권등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판매나 전화 예매 등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취약계층의 문화생활 향유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제33조의2 및 제43조제3항제7호 신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 및 제3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디지털취약계층의 입장권등 보장을 위한 지원) ① 공연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는 공연장 입장권등의 일정 비율을 노인, 장애인 등 정보기기 활용능력이 부족한 사람(이하 “디지털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현장판매, 전화예매 등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 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극장 등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공연예술 참여 증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3년마다 디지털취약계층의 공연 관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장권등의 일정 비율, 디지털취약계층의 범위 및 공연장 입장권등 구입에 관한 조치 내용,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공연장 입장권등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판

매, 전화예매 등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3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4(디지털취약계층의 입장권등 보장을 위한 지원) ① 공연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는 공연장 입장권등의 일정 비율을 노인, 장애인 등 정보기기 활용능력이 부족한 사람(이하 “디지털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현장판매, 전화예매 등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 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극장 등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u> <u>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공연예술 참여 증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3년마다 디지털취약계층의 공연 관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u><신 설></u> 제43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u><신 설></u> ④·⑤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입장권등의 일정 비율, 디지털취약계층의 범위 및 공연장 입장권등 구입에 관한 조치 내용,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공연장 입장권등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판매, 전화예매 등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3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④·⑤ (현행과 같음)
---	--